

창원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9가단12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형란, 김주혜 (소송구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4.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김해시 C 답 3025.7㎡에 대한 매도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를 52,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주선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받은 후 피고에게 부동산 중개에 대한 수수료, 활동비, 수고비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공박, 경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35,000,000원이 아닌 30,000,000원이고, 이 돈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받은 후 “아빠 저번에 계약 못한 위약금하고 지금까지 아빠가 나 돌봐주면서 쓴 돈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에 대한 고마운 마음의 표시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부동산 중개에 대한 대가로 35,000,000원 또는 30,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